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이창숙(Chang-sook Lee)

신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주저자)

김종철(Jong-chill Kim)

신라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의	참고문헌
III.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규정	Abstract
IV.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실용화 방안	

국문초록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추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유무역협정, 전자원산지증명서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인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미국, 페루 등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를 종국적으로 철폐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특혜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FTA가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FTA 효과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FTA로 인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¹⁾는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을 선결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²⁾ 수출입업자가 충족관리, 증명관리, 입증서류 구비 등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그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이 각국 정부가 아닌 수출입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입업자에게 원산지증명의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이러한 제도는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무역장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FTA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성장전략과 대처방향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연구는 원산지 제도와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주

1) FTA는 품목별(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설정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대부분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FTA 특혜 관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 체결국끼리만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은 FTA 관세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FTA 체결국들은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원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만을 FTA 특혜대상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역 측면의 문제도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21.

2)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차별성(differentiation)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은 각각 독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김석오·경제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원, 2010, p.45.

를 이루었다. 반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인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원산지인증을 받아놓은 기업들³⁾이 많아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⁴⁾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하여 한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방식의 증가로 인하여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에 전격 부응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현행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기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비롯하여 기존 연구에 기초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다.

2. 선행연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재진(2008)⁵⁾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FTA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원산지규정의 스파케티 불 효과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산지 정보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부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의 일부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손성수(2010)⁷⁾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인력 재배치를 통해

3) 스페인 1,267개, 스위스 2,600여 개, 노르웨이 3,000여 개. 손성수, FTA활용현황과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관세청, 「한국관세학회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2010.11, p.10. ; EU는 1975년에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한-EU 발효 전 인증 받은 인증수출자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 Tariff Preference : South Korea - more about approved exporter applications, p.2.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Import_ShowContent&propertyType=document&id=HMCE_PROD1_031505

4) 김기봉, FTA 혜택 가로막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YTN 뉴스, 2011.6.19.

5)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2008, pp.1-30.

6) 상계논문, p.21.

7) 손성수, 전계논문, pp.1-20.

FTA 종합대책단 T/F를 설치하고, 원산지관리체계 구축비용 절감을 위한 FTA-PASS 개발 및 배포, 가인증 제도 도입, 서한발송을 통한 홍보, 그리고 행정지도 강화 등이 있다.

김중근(2011)⁸⁾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FTA 체결시 PANEURO 방식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검토하였다. 특히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모든 FTA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인증수출자 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여 수출입기업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의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념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이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⁹⁾ 동 제도는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한국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¹⁰⁾되었다. 수출 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0년 4월 1일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여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한-아세안 FTA 등은 기관발급 시 발급 절차 간소화 해

8) 김중근,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1.9, pp.297-317.

9) 기획재정부, 전계서, p.114.

10) 상계서, p.114 ; EU는 FTA 체결국 간의 거래에서 국경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였다. 즉 국경에서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인증수출자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수출자 및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중근, 전계논문, p.299.

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받아야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비교

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형태	혜 택 비 교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소명서¹¹⁾ ④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⑤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 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 가능
한·EU*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특혜 관세 적용 가능)
한·칠레	자율발급	동 제도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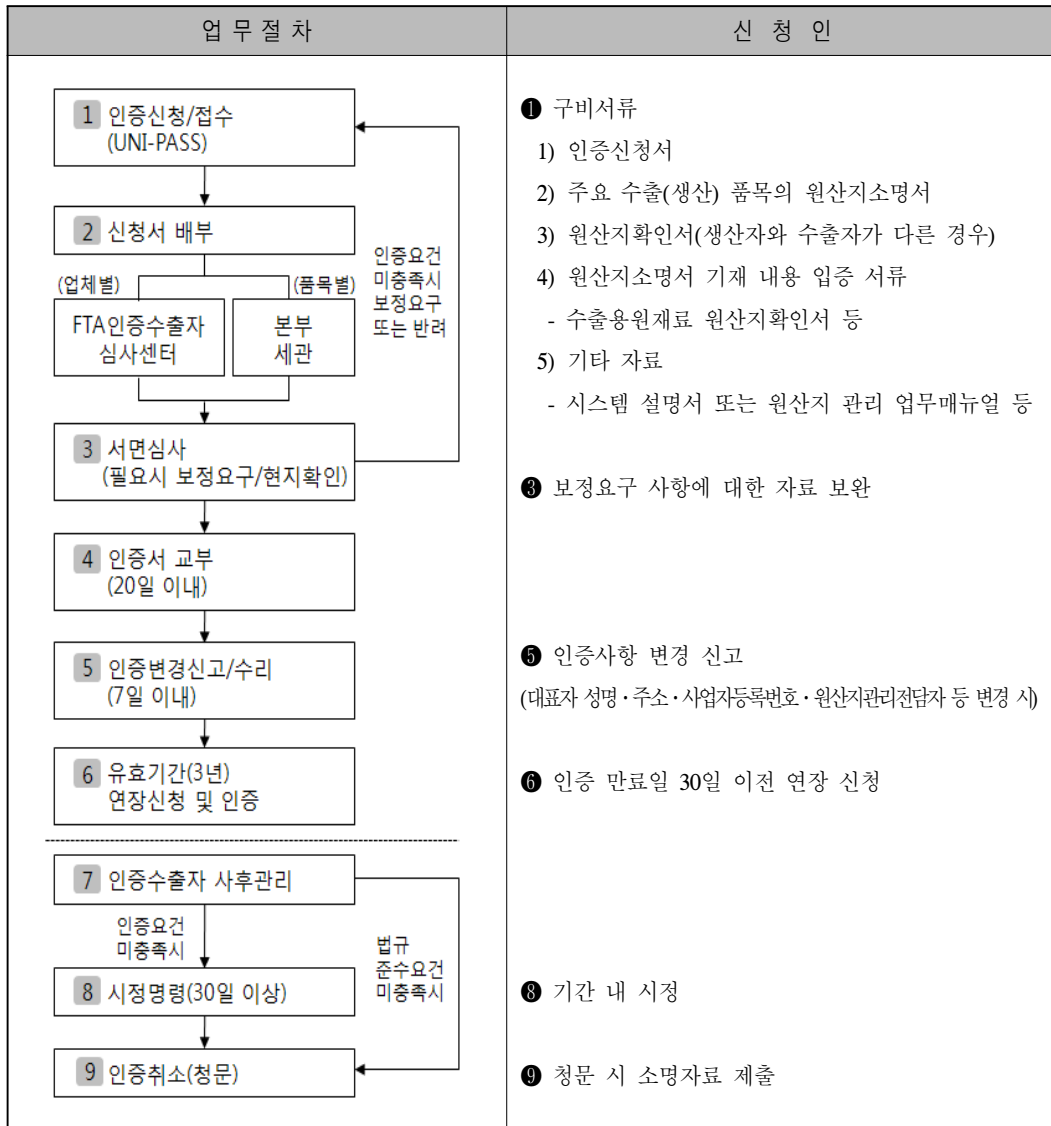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 신고서의 형태임.

자료 :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115.

특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인증업무 절차는 <표 2>와 같다.

11) 원산지소명서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 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 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 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 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http://ffa.customs.go.kr/kcsweb/user.tdf?a=user.wordfta2010.WordftaApp&c=1001&dicName=FTA&mc=FTA2010_LIBRARY_DIC

<표 2> 인증업무의 흐름도



자료 :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117.

2.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연혁

2007년 6월 1일 한-아세안 FTA 발효 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지정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신청자격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로 한정됨으로써 이용기업이 많지 않았다.¹²⁾

이후 2008년 7월 15일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1일 기존의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고, 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가령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연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증수출자 제도의 연혁

구 분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2007년 6월 1일 시행)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2008년 7월 15일 개정)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2010년 4월 1일 개정시행)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 불 이상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전년도 C/O발급 실적 20건 이상, 발급 오류 비율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 이상 C/O 미반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 능력 보유(전산시스템 보유)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 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 이상 C/O 미반려자
인증 물품	HS 6단위(모델·규격별)	모델·규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인증수출자 : 모든품목 ▪ 품목별 인증수출자 : HS 6단위
현장 확인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 여부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

자료 :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116.

12)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2, p.500.

Ⅲ.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규정

1.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규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¹³⁾ 둘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¹⁴⁾ 작성 대장에 작성 번호 및 작성 일자,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 일자,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¹⁵⁾

셋째,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 전문가 포함)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 증명 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넷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최근 2년간 거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여섯째, 최근 2년간 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곱째,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3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 1호. ; 다만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2-4-7조.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 2호.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②항 1-6호.

년으로 하고 있다.

2.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규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먼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이어야 한다. 물품은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원산지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 증명 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최근 2년간 거부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비교는 <표 4>와 같다.

한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한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데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해당 품목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품목을 확대하거나 신제품을 수출할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 성실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업체별 및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 관리 및 원산지 기준관리는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하

며,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은 회사소개 자료,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 확인서, 사전검증 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로 확인한다.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또한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이용하고 있다. 서류작성 적정 여부는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⁶⁾ 중소기업체들은 업무매뉴얼 및 제품 생산 공정 설명서 등 서류 형식을 갖추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완화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4〉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비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상자	▪ 수출자	▪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 미충족 수출자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기관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협정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준수도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 원산지 판단 능력 및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판단 능력 - 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 운영 -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전산) 보유 여부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법규 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미위반업체(최근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 기준 충족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인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서 - 주요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 통보
인증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인증수출자 : 3년 연장 인증수출자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품목별 인증 : 3년 연장 품목별 인증 : 3년
인증 철회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 시 고의적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남용한 경우 	▪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요건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 실적 반기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 실적 반기별 보고

자료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003111030003_97.pdf ;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114. ;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fta_web2010/_down/library/kor_eu.pdf

16)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10.21., p.6.

3.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국가별 운용 사례

국가별로 인증의 요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인 기업 정보, 회계시스템, 생산 공정, 수출규모, 기존 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양자 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품이 반드시 EU 원산지여야 하며, 연 수출 횟수가 최소한 3~4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¹⁷⁾

이 외 국가별 인증수출자 운용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5> 국가별 인증수출자 운용사례

영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는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수출할 의사가 있고,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 가능 수출자가 생산자 여부, 연간 수출 상품의 수 및 금액, 원산지 기준 충족 증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 작성
스위스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 신청 후 수출자가 생산자 여부, 수출 상품, 전자회계시스템 보유 여부, 지난 검증의 결과, 한 달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수 등을 검토 수출자의 평판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세관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청 과정 중 임의로 선택된 원산지증명서의 정밀 검증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인증이 발급되지 않음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일부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하고 인증을 오용한 경우 벌금 부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백하고 의도적인 인증 오용, 반복된 오용, 세관에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인증 취소 가능
노르웨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와 수출 상품, 원산지 증명, 해당 상품의 원산지 기준 등을 묻는 질문지 작성 지역 세관은 정기적인 수출 여부, 원산지 지위 인정 증거, 신뢰성 등을 검토 특히 수출 상품의 수나 금액보다 수출이 정기적인지 여부에 초점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는 최초 2년간 유효, 2년 후 검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5년 추가 지역 세관은 최초 2년 중 최초 1회, 5년 중 최소 2회 이상 인증수출자를 감독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점검 결과 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취소 가능
아일랜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는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번과 상품 설명을 신청서에 기재 지역 세관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세관이 인증수출자의 인증 사용을 감독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지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세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취소 가능

자료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003111030003_97.pdf

17) 손성수, 전계논문, p.10.

특히 EU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건수가 빈번히 발생하여야 한다.¹⁸⁾ 일본의 경우에도 인증신청자가 제1종 특정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체에 준 것이 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다. 즉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수출자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결국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수출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²⁰⁾

따라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인증수출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 제도의 활성화가 좌우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올바르게 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적중심의 원산지관리 강화가 철저히 요구되므로 인적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V.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실용화 방안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 강화

한국의 경우 2009년 수출 실적 기준으로 7,664개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대상 기업이 존재하나, 11월 19일 기준으로 208개 기업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다.²¹⁾ 이와 같이 인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첫째는 동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둘째는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신청 저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세청에서 지적한 바 있다.²²⁾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 보안 등의 타개책을 강구하였다. 일환으로 2010년 8월 가인증제도를 도

18)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2009, Article 23 Approved exporter, p.89.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customs_duties/rules_origin/preferential/handbook_en.pdf

19) 김종근, 전계논문, p.311.

20) 상계논문, p.298.

21) 손성수, 전계논문, p.13.

22) 상계논문, p.13.

입하고 수출기업의 인증신청 독려를 위하여 대상 기업들에 서한 발송과 FTA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행정 관리감독, 지도 강화를 위하여 對 EU 인증대상 기업에 대하여 Man-to-Man 방문 컨설팅까지 실시하였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71%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²⁴⁾ 부산 지역의 기업들도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경남 본부세관에 따르면, 2011년 5월 8일 부산·경남지역 1,031개 EU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약 10%만 인증을 받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하여 對 EU 수출기업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속히 지정받을 수 있도록 2011년 5월 27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실질 요건만을 심사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 인증서를 교부받아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조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요건 관련 서류는 조건부인증일로부터 3개월 내 보완 제출할 경우 사후 심사 후 정식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와 관련된 동선이 현저히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표 6>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심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심사 절차

구 분	인 증 요 건	심사 및 인증
실질 요건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인증 시 심사
형식 요건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적정 ③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여부 ④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관리 여부 등	조건부 인증 후 3월 내 서류보완

자료 : <http://fta.customs.go.kr>

이처럼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중소기업체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유관 기관들은 원산지 인증수

23) 상개논문, p.17.

24) 김기봉, FTA 혜택 가로막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YTN 뉴스, 2011.6.19.

25) 파이낸셜뉴스, EU 수출기업 ‘원산지 인증’ 서둘러야, 2011.5.8. ; 심지어 2011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 내 대책본부에서 발간한 FTA 소식지에 따르면 EU기업의 상당수가 한-EU FTA 협상과 발효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출자 제도를 홍보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기업들이 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받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시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경우에 기업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기업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²⁶⁾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출품의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섬유·의류제품만을 위한 FTA-PASS도 별도로 운영²⁷⁾하고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특혜 세율의 효과가 큰 품목이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른 물품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섬유·의류업계는 자금이나 인력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어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 원산지 판정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더라도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나 생산자는 원자재를 공급·조달하는 단계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원산지 정보관리가 필요하다.²⁸⁾ 즉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내에서의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 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²⁹⁾

또한 <표 7>에서도 나타나듯이 원산지증명서의 서류 보관기간도 협정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산지 결정 기준뿐만 아니라 서류 보관기간까지도 자동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관리시스템과 함께 산업별 및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증명에 관한 주요한 Check Point 또는 Check List를 포함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 기업들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 1호.

27) 2011년 5월 25일 관련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섬유·의류제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8)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p.386.

29) 안재진,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08, p.26.

에게 보급³⁰⁾할 경우 원산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³¹⁾

〈표 7〉 수출자 및 생산자의 협정별 서류 보관기간

구분	기산일	보관기간
한·칠레	C/O 서명일	5년
한·싱가포르	C/O 발급일	5년
한·EFTA	-	5년
한·ASEAN	C/O 발급일	3년
한·미국	C/O 발급일	5년
한·인도	C/O 발급일	5년
FTA 특례법	수출신고 수리일	5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일	

자료 : 기획재정부, FTA활용 핸드북, p.38.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ERP 연계시스템을 산업별로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종석 교수가 제시한 바 있는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플랫폼³²⁾은 중소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시스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실용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오류의 빈도 및 위험의 정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 확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³³⁾ 현행 규정에 따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30) 최준호·안재진, “특혜 C/O의 인터넷 발급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8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7, p.322.

31) 원산지 규정은 역내산업의 보호, 우회수입 방지, 역내무역 창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복잡하고 엄격하면서 까다로운 절차를 시행하여 원산지증명 절차에 대한 행정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김창봉·임덕환, “원산지 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1.5, p.90.

32) 심종석,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0.6, pp.319-342.

33) FTA 특례법 제13조 제9항.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품목별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없다.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즉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일반 인력 또는 해당 근무자가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하여 총합이 40점 이상일 경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최대 20점)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20점)
-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10점
-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학위 소지자 : 5점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
- FTA 관련 업무 전담경력 :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내 5점

하지만 원산지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다시 다른 인력으로 재교육을 시켜야하는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편성·운영되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체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든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이든 간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역학 전공 및 무역업무 종사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을 비롯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및 비용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경우 취업의 기회도 확대·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자동으로 복구하는 조기경보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취득한 바 있다. 동 시스템은 수출입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각 업무단계별 시스템 가동 현황을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지연이

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화면에 음성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모든 운영자가 입체적으로 장애사실을 공유하고 제어함으로써 신속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자통관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이 FTA-PASS 및 기업의 ERP 시스템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PASS를 통하여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거나 또는 인정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시스템에 원산지 충족여부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입업자는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업자는 사후심사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오류 없이 작성하여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많은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 강화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원료의 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복잡하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 증명을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율발급의 경우 기관발급에 비해 허위증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⁶⁾ <표 8>은 특혜 관세 위반사유 및 추정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수입업자가 특혜 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한 경우 수출업자가 허위로 증명하였거나, 추후 사후입증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어 교역 국가에서 비교역 국가로 퇴보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³⁷⁾

즉, FTA를 잘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의 선점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가 잘못 판정되었거나 원산지 기준의 미충족이 판명되면 특혜 관세의 적용배제, 엄청난 금액의 사후 추징에

34) 관세청 보도자료, “세계 최초 관세청 전자통관 서비스 장애 조기경보시스템 특허 취득”, 2010.5.24.

35) 조미진·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6, p.95.

36) 심종석, 전제논문, p.331.

37) 이용완, “특혜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FTA 특혜관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p.487.

따른 경제적 손실, 그리고 상대국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에 휘말릴 수 있다.³⁸⁾

따라서 미국, EU 등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의 특혜 관세의 수혜폭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원산지 조사 및 관리가 늘어나 특혜 관세의 적용과 관련한 세관과 납세자, 수출입자 간의 갈등이 늘어날 것이다.³⁹⁾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허위사실 없이 입증되도록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위하여 인적체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⁴⁰⁾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⁴¹⁾ 원산지 범죄에 대한 심각성 주입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표 8〉 특혜 관세 위반사유 및 추징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위반유형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산지 결정 기준 위반	0	0	90	6,256	171	11,561
세율적용 오류	364	927	622	1,413	307	2,464
직접운송요건 위반	39	251	17	45	7	250
증명서류요건 위반	96	453	177	812	67	169
기 타	319	324	65	280	55	318
합 계	818	1,955	971	8,806	607	14,762

자료 : 관세청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관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2, p.503.

V. 결 론

한-EU FTA를 기점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²⁾ 관세청 관계자는 FTA 발효 전 범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이점

38)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p.140.

39) 심종석·오현석,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12, pp.3-4.

40) 김중근, 전계논문, p.315.

41) 한국의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10.21., p.12. ;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인증취소와 함께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42)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9%·수입 16%가 증가하였으며, EU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서도 FTA가 對 EU 교역 확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FTA 발효 초기 임에도 한-EU FTA 활용률이 수출 55%, 수입 13%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수출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하는 등 이행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FTA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⁴³⁾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실적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용화 방안을 통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동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넓히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ERP 시스템의 보급 및 연계지원을 통하여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별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일관된 원산지 판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는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0년 2월 기준으로 무역협회에 무역업체로 등록된 기업 수는 105,145개이다.⁴⁴⁾ 하지만 현재 564명의 원산지관리사가 배출⁴⁵⁾된 상태이어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교육 기회는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력 양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입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각 업무단계별 시스템 가동 현황의 집중 관

FTA와 달리 한-EU FTA 체결 후에는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43) 관세무역개발원, 주간관세무역 <http://www.custra.com/publication.do?method=getView&&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20&cmscd=CM0404&pnum=1&cnum=1&pageNum=1&srcSpw=&srcSdate=&srcEdate=&srcTnum=&thisCmscd=CM0404&nno=42763>

44) 한국무역협회 KITA 소개, <http://www.kita.net/info/intro/manage/02/index.jsp>

45)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2010.6.27.(150명), 2010.11.13.(91명), 2011.5.28.(194명), 그리고 2011.11.12.(129명) 총4회 실시하였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8796 ; http://www.origin.or.kr/NoticeLi.action?research=Y&board_no=20111209000000000001

리가 이루어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신속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전자통관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FTA-PASS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이 조기 경보 된다면 잘못된 원산지 충족 및 증명서 발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허위사실 없이 사전에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게 발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FTA를 통하여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도한 추정금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폐 여부마저 위기에 내몰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도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 및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EU FTA를 통한 특혜 관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실용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FTA의 체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향후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FTA 활용 실무매뉴얼」 2011.1.
- 김기봉, FTA 혜택 가로막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YTN 뉴스, 2011.6.19.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pp.44-76.
- 김중근,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11.9, pp.297-317.
-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1.5, pp.89-109.
-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pp.369-388.
-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010.10.21.
-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pp.139-162.
- 손성수, “FTA 활용현황과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관세청, 「한국관세학회 2010년 추계학술 발표대회」 2010.11, pp.1-20.
- 심종석·오현석,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12, pp.1-16.
- 심종석,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0.6, pp.319-342.
-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의대학교, 2008, pp.1-30.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2, pp.493-518.
- 이용완, “특혜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FTA 특혜관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pp.461-490.
- 조미진·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6, pp.83-105.
- 최준호·안재진, “특혜 C/O의 인터넷 발급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8권 제2호, 국

제e비즈니스학회, 2007, pp.311-32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관세무역개발원, <http://www.kctdi.or.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

HM Revenue & Customs, <http://www.hmrc.gov.uk>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 2(협정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절차)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Tariff Preference : South Korea - more about approved exporter applications,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Import_ShowContent&propertyType=document&id=HMCE_PROD1_031505

ABSTRACT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Chang-sook Lee* · Jong-chill Kim**

Certificates of Origin(C/O) are necessary to gain benefits fro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FTA). The C/O can be issued by issuing authorities or by exporters themselves. Recently, due to signed FTA such as Korean-EU FTA, issuance of self-declared C/O by expor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be qualified to issue self-declared C/O, exporters are required to acquire Approved Exporter status.

An Approved Exporter is only required to present an invoice to substitute the certificate. The invoice contains an Approved Exporter number and a declaration that states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Either certification or notarization is not necessary.

In result, the exporters are responsible for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self-declared C/O which issued incorrectly, even if it is not intentional.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ied authoriz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and the practical use of its status. If companies obtain more Approved Exporter status, the effects of FTA would be maximized due to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C/O.

Key Words : Approved Exporter, FTA, C/O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illa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illa University